

| | | | | | |
|---|-----|-----|----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 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에 제3항, 제4항을 신설하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금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, -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토록 함. ○ 제12조(시행규칙)를 신설하여 위임규정을 둠.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">624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번호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2000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0년 6월 13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</p> <p>나.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6일</p> <p>다. 상정일자 :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)</p> <p>2. 제안설명의 요지(행정관리국장 : 김재종)</p> <p>가.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·봉사하던 중 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, 신설된 상이등급 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임. 안 제2조 제3항)</p> <p>나. 주요골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·봉사하던 중 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, 신설된 상이등급 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임.</p> <p>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김종식) ○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</p> | 의안 | 624 | 번호 | | <p>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2000.1.1부터 1개 등급(7급)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도 기존 상이등급(1-6)과 같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·자동차세를 면제로자 함임.</p> <p>○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·봉사하던 중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, 신설된 상이등급 7급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,</p> <p>○ 또한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상이국가유공자 모두를 면제하고 있고, LPG 연료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시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○ 다만,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·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9개 시·도에서는 면제 확대에 찬성하였고(서울 50%감면, 대전 세수보전 요청), 나머지 7개 시·도에서는 지방재정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제석위원 8명, 전원일치)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대한수정안</p> <p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</p> <p>안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. 기타 수입금 <p>안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</p> |
| 의안 | 624 | | | | |
| 번호 | | | | | |